

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 나. 회부일자 : '94. 2. 15
 다. 상정일자 : '94. 2. 24
 라. 의결일자 : '94. 3. 17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
 나. 제안사유

○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므로써,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시에서 긴장 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 함.

다. 주요골자

- 상수도(공업용수)요금, 하수도 사용료,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, 주차요금 심의
 ○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및 수수료, 사용료 등 심의

3. 질의 및 답변내용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부천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이 두 명 위촉되어 있는데 상정한 조례안에 시의원이 누락된 이유는?	○ 물가대책위원회에 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위촉토록 하겠음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

-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참여가 없는 것은 집행부의 임의추천 가능성이 있어 시의원과 소비자들 위원으로 위촉하고,
 ○ 제4조 4항(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)은 어떤 안건 심의 시 임의대로 심의 통과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.

나. 찬성토론

-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시의원과 소비자를 다수 참여토록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고,
- 제4조 4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전원 찬성

5. 수정안 내용

- 제4조 제4항을 “제3항의 위원 중 5인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”로 수정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-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은 가급적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많은 이해관계인과 시민이 참여하여야 하며,
- 정부에서 일괄적인 물가조정 정책은 일정기간 동안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자유경쟁 체제가 정착화 되어 자율조정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.
- 조례 중 집행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조문화되어 있는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다고 봄.

8. 기타 필요사항 : 없음

9. 체계적 심사내용 : 없음

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254
의 건 년 월 일	94. 5. 12 (제28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3. 23

제 출 자 : 사회산업위원장

1. 수접이유

-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위원회 구성이 해당공무원, 유관 기관 단체장, 경제분야 전문인사로만 위촉토록 되어 있는 것은 진정한 소비자 물가를 체험하고 있는 80만 부천시민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없어,
- 물가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실소비자와 시민대표를 위원으로 포함시키야 한다는 취지 아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.

2. 주요골자

-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4조 제4항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“제3항의 위원 중 5인은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”로 수정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	행	수	정	안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	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생	략	
..... 한다.	 한다.			
② 위원장은	② 위원장은	② 생	략	
③ 위원은 물가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	③ 위원은 물가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	③ 생	략	
고 유관기관,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	고 유관기관,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			
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	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			
위촉한다.	위촉한다.			
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	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	④ 제3항의 위원 중 5인은 사회산업위원회		
고 인정된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	고 인정된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	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.		
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			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위원회는 부천시시장의 소속 하에 둔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
2.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
3. 물가관련 기관·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
4.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
5.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·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상수도(공업용수)요금

2. 하수도 사용료

3. 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

4. 주차요금

5.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·사용료 등

③ 제2항 제1호,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·군 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%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물가관련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향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제3항의 위원 중 5인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지위경제과장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.

제10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·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심의안건제출)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과여비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'94. 2. 15

다. 상정일자 : '94. 2. 24